

#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447
----------	-----

제안연월일 : 2009. 3. 22

제안자 : 행정자치위원장

## 1. 수정이유

건설폐재 파쇄 사업 지속추진을 위한 노력을 한 후 관련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관련조항을 현행대로 수정하려는 것임.

## 2. 주요내용

건설폐재 파쇄 사업 관련조항을 현행조례대로 하기 위하여 추가함.(안 제19조제1항제7호 및 안 부칙 제2조).

##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19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건설자재 생산 및 판매(시멘트가공사업중 레미콘·아스콘 판매사업은 제외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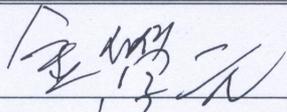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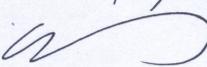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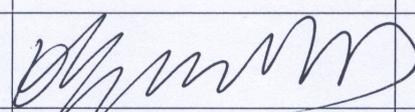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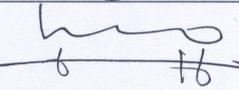
안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는 이 조례에 따른 대전도시공사로 본다.

## 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19조(사업업무) ①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<u>업무를</u> 행한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4. 국가 또는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</p> <p>5. ~ 6. (생략)</p> <p>7. 건설자재 생산 및 판매 (시멘트가공사업중 레미콘·아스콘 판매사업은 제외)</p> <p>8. ~ 13. (생략)</p> <p>14. 도시가스사업</p> <p>15. ~ 18. (생략)</p> <p>②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<u>업무</u> 또는 이와 유사한 <u>업무를</u> 행하는 다른 법인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할 수 있다.</p>	<p>제19조(사업) ①----- ----- ----- <u>사</u> <u>업을</u> 수행 한다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----- <u>일반산업단지</u> -----</p> <p>5. ~ 6. (현행과 같음) <u>&lt;삭제&gt;</u></p> <p>8. ~ 13. (현행과 같음) <u>&lt;삭제&gt;</u></p> <p>15. ~ 18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----- <u>각 호의 어느 하나</u>----- -----<u>사업</u>----- -----<u>사업을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칙</p> <p>제2조(경과조치)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는 이 조례에 따른 대전도시공사로 본다.</p> <p>②제19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설폐재 파쇄장 위탁대행사업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존치한다.</p>	<p>제19조(개정안과 같음)</p> <p>1. ~ 3.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4.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5. ~ 6.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7. (현행과 같음)</p> <p>8. ~ 13.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14.(개정안과 같음)</p> <p>15. ~ 18.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②(개정안과 같음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칙</p> <p>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는 이 조례에 따른 대전도시공사로 본다.</p>

# 찬성의원 서명

의원명	서명	비고
가 박 순		
나 김 병 (남)		
다 유 민		
라 정 희		
송 재 용		
한 영 관	